

# 뉴욕주 네일업 규정 법안

발의자: 론 김 뉴욕주하원의원 | 2015년 6월



개정 목적: 전문 네일인 연습생 제도 법제화 및 네일업 소 운영 허가 관련 행정 규제에 대한 뉴욕주 주무장관의 권한 개정

## 법안 초안

- ✓ 주무장관의 권한으로 각 네일업체가 임금 보증보험이나 채권을 구매하는 것을 의무화
- ✓ 네일업체의 즉각적인 업소 폐쇄 및 운영허가 취소 권한을 주무장관에게 부여하고 추후 네일업체가 이의를 제기하도록 행정규정 개정
- ✓ 무면허 종사자를 고용하거나 임금 보증 채권을 구입하지 않을 시 업체주인과 종사자에게 최대 6개월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- ✓ 네일업 행정규제와 관련, 주무장관이 필요에 따라 주검찰총장의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

## 개정 법안

- ✓ 네일업 업체의 임금 보증보험이나 채권 구매를 의무화 하는 내용 삭제
- ✓ 각 네일업체가 합법적 절차와 권리에 따라 처벌에 대해 행정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고, 사법기관에 의한 적법성 유무 판결 전까지 업소 폐쇄를 불허 하도록 개정
- ✓ 무면허 종사자 고용 및 임금 보증 채권 미구입에 대해 주정부가 민사상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내릴 수 없도록 개정
- ✓ 임금 보증보험 및 채권 상품의 적정 시장가격 과시증 판매에 대한 적법성을 뉴욕주재 주무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지 못할 경우 네일업체에 구매를 의무화 할 수 없도록 개정